

복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공 보

제1187호 2024. 2. 7. (수)

공 고

제2024-196호 부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										
람										

○부산광역시복구공고제2024-196호

부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부산광역시 복구청장

부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포상은 부산광역시 복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포상의 취소) ①구청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포상절차) ① (생 략)</p> <p>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④ (생 략)</p> <p><신 설></p> <p>⑤·⑥ (생 략)</p> <p><신 설></p> <p>제15조 (생 략)</p>	<p>제10조(포상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포상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p> <p>1.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p> <p>2.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p> <p>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p> <p>제15조(포상의 취소) ①구청장은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p> <p>1.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p> <p>2.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p> <p>②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p> <p>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p> <p>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p>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부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